大田直轄市都市計劃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

議案 113 番號

提出年月日: 1992. 3.

提出者: 大田直轄市長

1. 提 案 理 由

都市計劃에 關한 愼重한 檢討와 議決의 客觀性 및 公正性을 提高하기 爲 하여 都市計劃委員會에 常任企劃團을 設置, 都市計劃에 關한 全般的인 企 劃調査및 硏究機能을 强化하고자 함.

2. 主要骨子

- 가. 都市計劃委員會 所屬下에 常任企劃團 設置條項을 新設하여 專門家에 의 한 都市計劃의 愼重한 檢討 및 研究分析을 通해 合理的인 中長期 都市 計劃樹立과 都市計劃에 關한 公信力 提高(案 第3項 新設)
- 나. 都市計劃委員會 "分科委員會"를 "小委員會"로 名稱 變更하고 小委員會를 通한 現地調査 및 利害關係人의 意見聽取等 深層調査토록 함.

(案 第2章 7條)

다. 都市計劃委員會 運營會議의 非公開條項을 新設하여 會議中 所信있고 自 由로 計論雰圍氣 保障 (案 第2章 10條)

대전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안

대전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내지 제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대전직할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이하 "기 획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지급) 대전직할시(이하 "직할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할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도시계획위위회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 2.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3. 대전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며 자치구청장을 포함한다)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 ③위원은 직할시의 관계 실.국장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당연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 회의 의장이 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 결정권을 갖는다.
-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의원중에서 호선한다.
 - ④소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 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을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 을 둔다.
 - ②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관계장이 된다.
 -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자료제출 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이해관계 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②시장 또는 구청장은 해당 도시계획의 결정과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특정인의 참여또는 공개토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3 장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제12조(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연구 검토
- 2. 시장이 부여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의 기획, 지도 및 조사연구 검토
- 3. 관련 개발계획의 기획수립, 분석, 평가.
- 제13조(구성) ①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상임연구원, 간사로 구성한다.
 - ②단장은 구성원의 통솔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상임연구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③상임연구원은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의한 5명 이내의 직원으로 임용한다.
 - ④간사는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약간의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 제14조(단장의 임무등) ①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여 위원장과 관계국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업무의 수행과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의 분장 및 복무를 지도 감독한다.
 - ②단장은 시장이 부여한 도시계획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사항을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 제15조(임용, 복무) 단장 및 상임연구원의 임용 및 복무등은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따른다.
- 제16조(자료제출 요구등) ①단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당해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 취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당해공무원은 단장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7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적 (안) 행 71 혐

제목:대전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초레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 할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제 # 또 (구당의 어디/ 이노국 당구권이 어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 직할시 각종 위원의 실비변상조례"의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및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증에서 호선한다.
- (3) 위원은 직할시의 관계 실,국과장과 도 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 서 대전직합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①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 희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희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 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 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전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최 제 1 장

제1조(목적) 이 조래는 도시계획법 제75조내지 제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함시 도시계 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및 대전직함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의 설치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지급) 대전직할시(이하"직할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할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도시계획위원회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 에 대한 심의
- 2.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또는 자문 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또는 자문
- 3. 대전직할시장(이하"시장"이라 하며 자치구청 장을 포함한다)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에 대한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증
- 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직할시의 관계 성.국장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당연 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 집하고 위원회의 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 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
- 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器 대행 한다.

현	1	개	14 (A)	정 (안)
구하거나 위원장(에는 위원장이 소 ② 위원회의 회의 석으로 개의하고, 으로 의결한다.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	거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 개최하고 출석위	필요하다고 인 의는 재적위원 1원 과반수의 장은 표결권을	의는 시장이 요구하 정할때 위원장이 과반수의 충석으로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지며, 가부동수
를 전문 분파별로 수립을 위하여 위 다. ② 분파위원회는 ③ 연구원은 해당 전문적 지식과 경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 분당 연구하고 도시계획 원회에 분과위원회을 둔 연구원 1인을 돌수 있다. 분과위원회 업무에 관한 협이 풍부한 자중에서 되 상임직으로 한다.	의하기 위하여 ② 소위원회의 하며, 5인이상 ③ 소위원회의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 ⑤ 소위원회에 걸한 사항에 대	위원회에 소위 위원은 위원회 7인이하의 위 위원장은 소위 위원 과반수의 2로 의결한다. 위임된 사항증 하여는 소위원	원회 위원중에서 출석과 출석위원
리하게 하기 위하 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 여 긴사 1인과 서기 약간 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하는 주관계장이	하기 위하여 간 ② 간사는 도시 주관하는 주관계	사 1인과 서기 계획과장이 되 장이 된다. 는 위원장의 (의 서무를 치리하게 약간인을 둔다. 고 서기는 위원회를 명을 받아 위원회의
하다고 인정할 때 대하여 자료제출	구등)(1) 위원희는 필요 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 의 설명을 들음수 있다.	인정할 때에는 여 필요한 자료 명을 들을수 있 ② 시장 또는 구	관계공무원과 의 제출을 요 [.] 다. ¹ 청장은 해당	원회는 필요하다고 이해관계인에 대하 구할 수 있으며, 성 도시계획의 결정자 회에 출석하여 발언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의 · 공개토록 하고	는 비공개회의문 규정에 의하여 특정 있는 경우에는
때에는 회의목을	원장은 희의를 개최하였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희의록) 는 희의목을 작	위원장은 희의 성하여 이를 !	물 개최하였을 때에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제 3	장 도시계획	상임기 획 단
		1.시장이 입안 관한 사항 C 2.시장이 부여	한 도시기본계 경구 검토 하는 도시계획 조사연구 검토	

<u>현</u>	9	계	정 (인)
(신설)		라 한다) 상임연구원, ② 단장은 구성원의 통 상임연구원증에서 시장 ③ 상임연구원은 지방전 5명 이내의 직원으로 일 ④ 간사는 위원회의 간	솔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이 입명한다. 전문적 공무원 규정에 의한 입용한다.
(신설)		제14조(단장의 임무등) 하며 위원장과 관계국경 무의 수행과 기획단원이 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단장은 시장이 부여 사전검토후 그 결과를	① 단장은 기획단옷 대표 할의 지시를 받아, 연구업 내대한 사무의 분장및 복 한 도시계획안건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나 수 있다.
(신설)		제15조(임용, 복무) 단칭 복무등은 지방전문직 공	B및 상임연구원의 임용및 B무원 규정에 따른다.
(신설)		│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 │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의 │ ② 관계기관 및 당해 공	하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2.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장 보 최
, a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에 위원회 은 위원회의	칙)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의걸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이 조례는 19	최 (조례 제1793호) 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이 조례는 공포한 남부터	칙 터 시행한다.

聯法令拔萃 閣

都市計劃法

第75條 (地方都市計劃委員會) ①都市計劃에 관하여 遵知事의 諮問(第2項의 規定에 의하 여 市都市計劃委員會가 設置된 市의 都市 計劃에 관하여는 제외한다)에 應하게 하며 中央委員會의 所管事項中 委任된 事項量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遊에 地方都市計劃 委員會(이하 "地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都市計劃에 관하여 市長의 諮問에 應하게 하며 當該市의 都市計劃家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市에 市都市 計劃委員會를 둘 수 있다.

- 第76條 (運營細則) ①이 法에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 中央委員會의 通常에 관하여 必要 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地方委員會以 市都市計劃委員會의 設置以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專項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第77條 (委員등의 手當里 旅費) 中央委員會. 地方委員會以 市都市計劃委員會의 委員이나 專門委員에게는 大統領令 또는 條例가 정하 는 바에 의하여 手當및 旅費를 支給할 수 있다.

都市計劃法施行令。

제58조의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지방도시 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82.10.23>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부시장이, 도에 있어서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위원은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 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또는 위촉한다. <개점 81.9.25>
- ④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공무원인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⑥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충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돌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8조의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 ①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 율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법 제72조 제2항및 이 영 제58조약 규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 다. (본조신설 88.2.16)

都市計劃法

第77條의2 (都市計劃常任企劃團) 市長 또는 郡守가 立案한 都市基本計劃 또는 都市計劃 에,대한 審查의 遵知事.市長또는 郡守가 哪託하는 都市計劃에 관한 企劃.指導및 調查. 研究를 하기 위하여 地方委員會에 當該 地方自治團體의、條例의 정하는 바에 따라 都市計劃常任企劃團을 들 수 있다. (本條新設 81.3.31)

都市計劃法 施行令

제59조(시도시계획위원회를 심치하는 시) 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계획위
원회를 둘 수 있는 도시는 별표 5와 같다.
제6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지방도시
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용한다. 다만,당해 지방
지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